

울산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134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

피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최종상

변론 종결 2021. 4. 28.

판결 선고 2021. 5. 26.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9. 8.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C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9. 8. 23. 접수 제1247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A와 C 사이에 2019. 8.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A는 C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9. 8. 23. 접수 제1247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 피고 B와 C 사이에 2019. 8.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B는 C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9. 8. 29. 접수 제1272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중 '말소하라'는 기재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오기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3. 2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억 원, 신용보증기간 2016. 3. 29.부터 2017. 3.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보증기한은 2020. 3. 27.까지로 연장되었다), C는 11억 7,000만 원을 보증채무최고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4. 1. 959,989,150원, 2014. 10. 29. 129,000,000원 합계 1,088,989,15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출기한도 2020. 3. 27.과 2019. 8. 29.로 연장되었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9. 9. 4.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2020. 1. 16.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합계 788,790,1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차전1653호로 소외 회사와 C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7. '소외 회사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88,450,809원 및 그 중

788,450,73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위 지급명령은 2020. 3. 24. 확정되었다.

마. 한편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3. 피고 A에게 같은 날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근저당권 피고 A)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247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또한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9. 8. 23. 피고 A에게 같은 날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근저당권 피고 A)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247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9. 8. 29. 피고 B에게 같은 날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 피고 B)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272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피고들과 C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C가 피고들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약 10일 뒤인 2019. 9. 4.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사전구상권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권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들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피고들과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피고 A는 2015. 2. 5. C에게 대여한 2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8. 23.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05. 5. 4. C에게 빌려준 4,800만 원과 2019. 5. 30. 빌려 준 5,0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8. 23.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와 C 사이의 법률관계를 전혀 알지 못해 사해의사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C 사이에는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2019. 8. 23. 및 같은 달 29.)로부터 불과 10여일 남짓 경과한 후인 2019. 9. 4. 당좌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20. 1. 16.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여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갑 제1호증(갑 제7호증의 5와 같음),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3, 7, 갑 제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과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C가 보유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2014년도 취득가액이고, 이후 어느 정도 부동산 시가가 상승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788,450,735원 ¹⁾ 갑 제1호증(지급명령, 갑 제7호증의 5와 같은)의 원금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28,400,000원 ²⁾ 갑 제6호증의 1(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2014년도 취득가액임)
피고들에 대한 채무 합계	298,000,000원 ³⁾ 피고 A에 대한 차용금 200,000,000원 +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98,0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46,100,000원 ⁴⁾ 갑 제6호증의 2(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2014년도 취득가액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00,199,006원 ⁵⁾ 갑 제7호증의 7(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및 갑 제5호증(신용보증사고통지서)상 대출잔액 1,088,989,150원 - 갑 제4호증(대위변제증서)상 변제금액 788,790,144원 = 300,199,006원		
E은행에 대한 2012. 6. 4.자 물상보증채무	300,000,000원 ⁶⁾ 갑 제7호증의 1(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상 미상환 원금 300,000,000원	경기 가평군 F 임야 84,198m ²	513,607,800원 ⁷⁾ 갑 제7호증의 3(감정평가서)
소극재산 합계	1,686,649,741원	적극재산 합계	588,107,800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앞서 본 C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C에게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고 B는 C에게 9,8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던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권자 또는 자신의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즉 피고들이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석

별지

- 1) 갑 제1호증(지급명령, 갑 제7호증의 5와 같음)의 원금
- 2) 갑 제6호증의 1(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2014년도 취득가액임)
- 3) 피고 A에 대한 차용금 200,000,000원 +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98,000,000원
- 4) 갑 제6호증의 2(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2014년도 취득가액임)
- 5) 갑 제7호증의 7(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및 갑 제5호증(신용보증사고통지서)상 대출잔액 1,088,989,150원 - 갑 제4호증(대위변제증서)상 변제금액 788,790,144원 = 300,199,006원
- 6) 갑 제7호증의 1(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상 미상환 원금 300,000,000원
- 7) 갑 제7호증의 3(감정평가서)